

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(전파)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 안내

1.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-2264(2026.4.6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정부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우려되어 관련된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을 안내하오니, 사업 담당자(계약담당자)께서는 하단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>

구 분	내 용	비 고
계약기간 연장 및 실비 지급, 지연배상금 산정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, 연장에 따른 현장유지비 등 추가 비용은 실비 반영</li> <li>▶ 위의 사유로 계약이 지체된 경우는 해당 지체일수는 지연배상금 산정시 제외</li> </ul>	법 § 22, 30, 영 § 75조의2, 90 계약집행기준 (예규) 제 9 장 제 8 절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품목·지수조정률이 3% 이상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</li> <li>▶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의 자재(순공사비의 0.5% 이상인 자재에 적용)의 가격증감률이 10%이상인 경우 동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</li> <li>▶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*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* 자재구매 가격이 5% 이상 증가시, 품목·지수조정률이 3%(물품구매계약은 6%) 이상 상승 등</li> </ul>	법 § 22, 영 § 73, 계약집행기준 제 1 장 제 7 절, 9 장 제 7 절

끝.

# 서울특별시



수신자 25개 자치구 재무부서, 서관과01-181, 서사01-43, 서아리주1-37, 서소1-25(25개소방서), 서울시  
출연기관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운영지원과장)

주무관 **고미경** 계약총괄팀장 **심동길** 재무과장 **04/07**  
**최선희**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17667 ( 2026. 4. 7. ) 접수 계약심사과-6158 ( 2026. 4. 7. 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소문청사 1동 10층 / http://www.seoul.go.kr  
재무과

전화 02-2133-3223 /전송 02-768-8880 / tellmi0635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